

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944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15. 12. 17
제안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2015년 3월 31일 유찬중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, 같은 해 11월 19일 남창진 의원이 발의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해 각각 4월 2일과 11월 20일에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,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, 이들 2건의 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,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,
-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법령에 적합하도록 정비하며,
- 조례명을 띄어쓰고, 법명 변경을 반영하며,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성격을 비상설위원회로 규정함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.
- 조례명을 띄어쓰기하고,
- 법령 변경을 반영하며(안 제1조 및 제2조제1항),
- 법령 사항을 반영하여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규정하고(안 제2조제2항),
-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성격을 비상설위원회로 규정함(안 제2조제1항).

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
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본문 중 “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”을 “전통시장
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”으로 하고, “의하여 서울특별시시장분
쟁조정위원회의”를 “따라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”을 “전통시
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”으로 하고,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
며, “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
회”로 하고,

제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에 구성·운영한다.

제2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.

1.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동의 등에 관한 분쟁
2. 시장정비사업의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관련한 점포소유자와 임차상인 간의 분쟁
3.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3조제2항 중 “시장정비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”을 “시장이 지명하는”으로 하고, “하며, 지명직 위원은 시설계획과장·주거재생과장 및 시장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”를 “하고, 위원은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”로 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통할한다”을 “총괄한다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소집하고자 하는”을 “소집하려는”으로 하고, “긴급을 요하는”를 “긴급한 경우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1에”를 “어느 하나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의하여 회피를 하고자 하는”을 “따라 회피하려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</u> 설치·운영 조례	<u>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</u> 설치·운영 조례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「 <u>재래시장</u> <u>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</u> 」 제 58조 및 제5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<u>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</u> <u>원회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</u>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 (목적) ----- 「 <u>전통시장</u> <u>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</u> 」 -- ----- 따라 <u>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</u> <u>회의</u> ----- -----
제2조 (설치 및 기능) ① 「 <u>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</u> <u>한 특별법</u> 」 (이하 “법”이라한다)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을 조 정하기 위하여 <u>서울특별시장 소속</u> <u>하에 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</u> <u>회(이하 “조정위원회”라 한다)를</u> 둔다. ②그 밖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<u>사업시행자와 임차상인을 포함한</u> <u>입점상인간의 분쟁으로서 위원장</u> <u>이 조정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.</u>	제2조 (설치 및 기능) ① 「 <u>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</u> <u>한 특별법</u> 」 ----- ----- <u>다른</u> --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</u> <u>회</u> ----- ----- . 다만, 조정위원회는 회의 개 <u>최가 필요할 때에 구성·운영한다.</u> ② <u>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</u> <u>의 사항으로 한다.</u> 1. <u>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동의 등</u> <u>에 관한 분쟁</u> 2. <u>시장정비사업의 입점상인 보호</u> <u>대책과 관련한 점포소유자와 임차</u> <u>상인 간의 분쟁</u>

	<p>3.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</p>
<p>제3조 (구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장은 시장정비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, 지명직 위원은 시설계획과장·주거재생과장 및 시장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.</p> <p>③ 위촉직 위원 중 법 제59조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위촉대상자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인을 포함한다.</p>	<p>제3조 (구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시장이 지명하는 ----- 하고, 위원은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----- 따른 ----- .</p>
<p>제4조 (위원장의 직무)</p> <p>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조 (위원장의 직무)</p> <p>① ----- 총괄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 (회의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·회의장소 및 분쟁조정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</p>	<p>제5조 (회의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소집하려는 ----- . ----- 긴급한 경우</p>

<p>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.</p>	<p>----- -----.</p>
<p>제7조 (위원의 제척)</p> <p>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사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피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/p>	<p>제7조 (위원의 제척)</p> <p>① ----- <u>어느 하나에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따라</u> <u>회피하려는</u> ----- -----.</p>